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
[대구고등법원 2018. 4. 6. 2017누7666]



【참조조문】

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, 제26호, 제93조 제1항 제3호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영진 담당변호사 박형수 외 2인)

【피고, 피항소인】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

【제1심판결】대구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8. 3. 16.

【주문】

1

- 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- 2. 피고가 2017. 2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주문 기재와 같다.

[이유]

- 11. 처분의 경위
- 가. 원고는 2016. 8. 11. 22:09경 경산시 (주소 생략)에 있는 '○○○○○아파트'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 제□□□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 경비초소(제◇◇◇동과 제□□□동 사이에 있다) 앞까지 소외 1 소유의 (차량번호 생략) 승용차(이하 '이 사건 승용차'라 한다)를 운전하였다.
- 나.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낸 충돌사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, 원고는 같은 날 23:10경부터 23:40경까지 경산경찰서 △△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.

다.

- 피고는 2017. 2. 22.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. 3. 26.자로 자동차운전면허(제1종 보통)를 취소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라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, 2017. 4. 11.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.
-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15호증, 을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와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- 1) 원고가 운전한 곳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으로 도로교통법상 '도로'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비록 원고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2) 원고는 당시 사실상 강제로 연행되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므로,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'관계 법령' 기재와 같다.

다.

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

- 1) 관련 법리
-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측정 불응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'도로'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'도로 이외의 곳'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두9359 판결 참조).
-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, '운전'이라 함은 도로(제44조, 제45조, 제54조 제1항,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 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)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(제26호)을 말하고, 여기서 '도로 '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[제1호 (라)목]를 의미한다.
-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 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,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일반교 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,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,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.
-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'ㄷ'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).

2) 판단

가) 우선, 갑 제5, 6, 7, 17, 18호증, 을 제3,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, 제1심 증인 소외 1,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모두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, 단지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 어 있으며,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은 정문과 후문의 2개 출입구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,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은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편도 2차선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, 후문은 편도 1차선 도로와 바로 연결되며, 정문과 후문은 모두 단지 내 각 동을돌아가며 설치된 큰 5각형 모양의 주통행로(이하 '이 사건 주통행로'라 한다)와 바로 연결된 사실, ③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정문과 후문 앞을 비롯하여 약 6곳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으나, 모든 초소에서 상시적으로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, ④ 정문과 후문에는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, 단지 일부 경비실 초소에 '외부차량 주차금지', '외부차량 경비실 경유'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뿐인 사실, 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제□□□동 앞 주차구획선(아파트 담장과 제□□□동 앞 사이의 'ㄷ'자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) 사이의 통로 부분에서 인근 경비초소(서로 이어져 있는 제□□□동 약 주차구역과 제 ◇◇◇동 주차구역의 중간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) 앞까지의 약 30m인데, 위 경비초소 앞은 제□□□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를 나와 외부로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(제◇◇◇동 차량은 우회전)하는 부분이고, 이곳에서 제□□□동 우측면과 제◇◇◇동 좌측면 사이에 설치된 좁은 통행로(이하 '이 사건 연결통로'라 한다)를 거쳐 이 사건 주통행로로 나갈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- 나)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,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운전한 제□□□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위 경비초소 앞 부분은 이 사건 연결통로와 함께 제◇◇◇동, 제□□□동 거주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,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거들만으로는,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- ①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, 차량이 단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로에 접한 정문과 후문 2곳의 출입구를 사용하여야 할 뿐이다.
 -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의 차량 통행은, ② 정문과 후문을 통하여 공로와 연결된 이 사건 주통행로, ④ 각동과 다른 동이나 담장 사이에 위치한 'ㄷ'자 공간 안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및 그 사이의 통로 부분, ⑤ 이 사건 주통행로와 위 주차구획선 및 그 사이의 통로를 연결하는 좁은 폭의 이 사건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- 그런데 이 사건 주통행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1곳의 차량 진입구(진·출입 겸용)만 있을 뿐 다른 출입구가 없고 반대편 부분은 막혀 있으므로, 해당 동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을 뿐,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다.
 - ③ 원고가 운전하였던 장소인 제□□□동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나 위 경비초소 앞 부분도,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뒷면 담장과 그에 나란히 위치한 제◇◇◇동 및 제□□□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'ㄷ'자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다. 외부에서 그곳으로 진입하려면 오로지 이 사건 주통행로에서 이 사건 연결통로(제□□□동 우측면과 제◇◇◇동 좌측면 사이에 설치된 좁은 통행로)를 거쳐 위 경비초소 앞 부분에 이를 수밖에 없고, 그곳에서 외부로 진출하려면 오로지 같은 통로를 역순으로 거쳐 이 사건 주통행로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, 그 반대편 부분들은 담장 등으로 막혀 있으므로, 일반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여 도로로 통행할 방법은 없다.

따라서 위 운전장소는 제◇◇◇동, 제□□□동 거주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될 뿐인 장소로 보아야 한다.

④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일반 차량의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, 경비원이 진·출입 차량을 모두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아파트 정문과 후문을 비롯하여 6곳 정도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고, 그 경비초소 등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설치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경비원이 여러 곳의 경비초소에 상주하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면서 주차공간 확보나 방범을 위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아파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방통행이나 주차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용달(재판장) 김태현 곽병수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